

GR 인증 심사기준(안)

해당표준번호 : GR M 0000-2012

해당표준명 : 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보호구

제정년월일 : 년 월 일

개정년월일 : 년 월 일

기술표준원

■ 공장심사 항목 내용

1. 품질 및 환경경영

심사항목	참고사항
1.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, 이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.○ 경영간부는 위 경영방침에 따라 연도별·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○ 사내표준은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, 품질경영의 추진 계획은 해당 우수재활용제조제품(GR)의 품질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,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.
1.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품질경영을 위한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,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,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.
1.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, 종사자는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.

심사항목	참고사항
1.4 품질관리 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,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. ○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- 사내표준의 제정·개정 등에 대한 총괄 -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-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·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-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,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- 직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- 외주 또는 2차 밴더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-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-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
1.5 불만처리 및 경로 추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.
1.6 작업환경 및 안전 시설 등의 관리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정한 작업환경(청소, 정리, 정돈 등)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. ○ 작업능률의 향상과 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2. 자재의 관리

심사항목	참고사항
2.1 자재 관리의 일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 (이하 이 표에서 “인수검사”라 한다) 및 자재관리를 하고,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. ○ 재활용 플라스틱의 자재 관리를 위하여 사내 규정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GR 품질표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○ 재료가 변경될 경우 또는 품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검사를 하여 재설정 하여야 한다.
- 열가소성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비중 2) 용융흐름지수 ○ PVC 등 할로젠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경우, 염화비닐단량체 함량이 1 mg/kg 이하이어야 한다.
- 첨가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플라스틱의 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주석화합물(TBT, TPT),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 등과 같은 사용상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, 첨가된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및 품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심사항목	참고사항
비고	<p>1.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.</p> <p>2. 제품의 종류,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 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3. 자재를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.</p>
2.2 재활용 자재관리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자체 생산시설의 보유 또는 공급받는 거래처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. ○ 원자재 수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○ 출처별, 종류별 원자재에 대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유해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○ GR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자재의 최소 사용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가능한 재활용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한다.

3. 공정 관리

심 사 항 목	참 고 사 항
3.1 사내표준의 준수 상태와 작업표준 이해 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, 작업방법, 작업 조건,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. ○ 사내표준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,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작업표준을 이해·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3.2 제조설비의 품질표준 부합화와 일상 점검관리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설비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점검 및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. ○ 현장배합표와 실제 생산배합의 동일성을 파악하고 공정별 작동상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. ○ 원료의 배합비율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. (신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, 첨가제 등)
- 주요공정별 관리항목 및 공정검사항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배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이물질 혼입여부 2) 재활용률 준수 3) 첨가제 2. 성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온도 2) 압력 3) 시간 3. 냉각 4. 탈형 5. 검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겉모양 2) 치수 3) 무게(중량)

	<p>6. 포장</p> <p>7. 출하</p>
비고	<p>1. 제품의 종류,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공정 수나 검사 또는 관리 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2. 외주처리 공정을 실시할 경우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
3.3 제조시설 능력 및 설비기준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활용 플라스틱이 중량기준 원료의 80% 이상 혼입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제조설비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, 보유, 윤활유 관리 등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. ○ 지정된 설비 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. <p>1. 계량설비</p> <p>2. 배합설비</p> <p>3. 성형설비(금형, 프레스 등)</p> <p>4. 냉각설비</p> <p>5. 포장설비</p>

4. 제품의 품질 관리

심사 항 목	참 고 사 항
4.1 검사방법의 GR 품질 표준 부합화 및 사내규정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R 품질표준에 부합하는 사내규정의 제정과 제품의 품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·관리하여야 한다. ○ 소비자가 우수재활용제조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, 제품명, 인증기관, 규격번호, 인증번호, 인증 유효기간 등 납품서에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.
4.2 제품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기록 활용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검사 기록관리 이외에 최소 1년 1회 이상 외부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. ○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.
- 제품검사 항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치수 2. 비중 3. 낙추충격시험 4. 인장강도 5. 회분 6. 굴곡강도 7. 아이조드충격강도 8. 가열변형
4.3 검사자의 관련규정 준수 및 시험결과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 및 검사 담당자는 GR품질표준에서 요구하는 관련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기구의 조작 및 수행의 숙련상태가 확보되어야 한다. ○ 시험결과에 대한 합리적 기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.
4.4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시험환경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실은 시험결과의 일관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조건과 주위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험수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5. 검사설비의 관리

심 사 항 목	참 고 사 항
5.1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규정 설정 및 실시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R 품질표준에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. (점검항목, 점검주기, 점검방법, 점검기준 등) ○ 시험·검사자는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시험관리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.
5.2 교정 검사주기 및 자체 유지관리 기록 준수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설정에 맞는 시험·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 ○ 교정은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관리하고 해당 검사장비에 교정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5.3 GR 품질표준에 부합되는 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R 품질표준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·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·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 ○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·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, 시험·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, 시험·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·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. ○ 우수재활용제조제품으로 품질의 정확성,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시험설비를 보유할 경우 숙련된 시험·검사자가 능숙하게 시험장비를 조작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<p>- 주요 시험설비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치수 측정설비(계량계측기) 2. 비중 측정설비 3. 낙추충격시험 측정설비 4. 인장강도 측정설비 5. 회분 시험설비 6. 굴곡강도 측정설비 7. 아이조드 충격강도 측정설비 8. 가열변형 측정설비
<p>비고</p> <p>1. 주요 시험설비 중, 1.의 시험설비는 자체 보유하여야 하며, 2.~8.의 시험설비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.</p>	

6. 기타(가산점)

심 사 항 목	참 고 사 항
6.1 보고 의무사항 준수 이행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재활용제조제품(GR) 인증요령에 의하여 인증범위 및 인증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시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○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실적보고를 준수하여야 한다.
6.2 품질관리 교육 이수에 대한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책임자 교육을 참여 하여 수료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. ○ 기타 기술표준원 및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 · 이수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.

■ 확인사항

1. 필수 점검 항목

- 다음 사항은 GR 인증의 기본요건에 해당되며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“부적합” 처리함
 - 재활용 원자재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
 - GR 품질표준상의 재활용 원자재의 최소 사용률을 만족하여야 함

2. 인증 제외사항

- 다음 사항은 GR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“부적합” 처리함
 - 재활용 핵심기술의 소유권 여부 및 품질관리
 - 생산방식이 임가공 형태인 경우, 핵심기술을 반드시 신청업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 임가공인 경우에는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함
 - 임가공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보장되어야 함

3. 위반사항 확인

- 우수재활용제조제품(GR) 인증요령 [별표 4] “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(제26조 관련)의 2. 개별기준에 따라,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
 - 개선권고(1차), 인증취소(2차)
 - GR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
 -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
(매년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기간 내 미제출)
 - 인증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

- 인증취소(1차)
 -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R 인증을 받은 경우
 - 부도 등으로 인증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

4. 제품심사 샘플링

- 시료채취는 신청한 종에 대하여 대표적인 한 사이즈만 채취하며, 시험 방법은 『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보호구(GR M 0000-2012)』의 GR 품질 표준 7. 항에 따라 실시함
- 샘플의 시험성적은 『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보호구(GR M 0000-2012)』의 GR 품질표준 5. ~ 6. 항에 따름

5.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

- 재활용 플라스틱은 『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보호구(GR M 0000-2012)』의 GR 품질표준 1. 항에 따라 중량기준으로 80% 이상 사용하여야 함
 - 배합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확인함(현장)
 - 배합설계 및 현장 시방배합서를 확인함(서류)
 - 원자재 입고대장 및 GR 제품 출고대장을 통하여 확인함(서류)

6. 제조공정시 참고사항

- 폐플라스틱을 소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,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형태의 유해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함
- 폐플라스틱을 절단 · 파쇄 · 분쇄하는 공정에서는 다른 형태의 유해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함
- 습식세척방식으로 폐플라스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척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해롭지 않아야 하며, 폐수는 폐수처리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함

- 플라스틱의 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주석화합물(TBT, TPT),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 등과 같은 사용상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, 첨가된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및 품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
- 제조 공정은 대기오염 · 수질오탁 · 소음 · 악취 · 유해물질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
-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하여 재사용하여야 함
- 혼합비율을 사용할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을 명기하여야 함

7. 시험검사 장비

- 규정된 시험장비는 모두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규정된 장비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시험 ·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시험장비는 미보유로 간주될 수 있음
- 예외사항
 - 업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된 시험장비 중 다음의 시험장비는 자체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공인시험성적서로 보유할 경우 대체 인정함
 - 비중 측정설비
 - 낙추충격시험 측정설비
 - 인장강도 측정설비
 - 회분 측정설비
 - 굴곡강도 시험설비
 - 아이조드 충격강도 측정설비
 - 가열변형 측정설비